

#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」

## 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.

### □ 주요내용

-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에 대한 감면으로 규정하였습니다.  
(안 제2조 내지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9조, 제20조, 제23조)
- 안 제9조에서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감면 범위를 건설 임대는 60~149㎡까지, 매입임대는 60~85㎡까지 확대하였으며
- 안 제10조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3년간 1,000분의 3에서 3년간 1,000분의 1.5로 축소하고
- 안 제15조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검토의견

○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, 2005. 3. 3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(안)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천 시달됨에 따른 적절한 조문개정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안 제15조 제2항에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토록 함은

-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부응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추진결과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

-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재산세까지 감면하면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
○ 안 제16조에서 “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”이 라고 정하여, 감면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“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”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동포구세감면조례중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5. 6

보고자 : 김 찬 재